

1977 토레모리노스 협약 의정서 개발을 위한 작업반회의 참석 보고서

한국어선협회 기술개발부
기술원 나 형 진

— 목 차 —

- I. 일반사항
- II. 의제별 토의내용 및 결과

I. 일반사항

- 가. 회의일자 : 1990. 10. 15~19
 나. 회의장소 : 스페인 토레모리노스
 (멜리아 코스타 델 솔
 호텔)

다. 참가국 및 대표단수 :	
회원국(준회원국 포함)	20개국 49명
UN 전문기구	1개기구 1명
정부간기구	1개기구 3명
비정부간기구	1개기구 1명
IMO 사무국	3명
합계	57명

- 라. 의제목록
 (의제 1) 의제 채택
 (의제 2) 의정서 초안의 조문에 관한
 검토 (SLF 35/9)
 1) 일반사항
 2) 의정서의 지위 (STATUS)에 관

한 검토

- 3) 의정서내에 HSSC (검사와 증서의 조화 제도)의 도입 가능성에 관한 검토
 (SLF 35/9/ADD. 1, SLF 35/9/3)
 - 4) 의정서의 선택부속서 도입 가능성 및 적용규정에 관한 검토
 - 5) 의정서 조문에 관한 검토
 - 6) 기타
- (의제 3) 의정서의 부속서 및 부록에 관한 검토
 (SLF 35/9, SLF 35/9/ADD. 1)
- 1) 부속서의 일반규정 및 양식에 관한 검토
 - 2) 10장의 개정에 관한 검토
 (NAV. 36/WP. 2/REV. 1)
 - 3) 1977 회의의 권고와 SFV 협약 부속서의 부록에 관한 검토
- (의제 4) 의정서 초안의 개발을 위한 업무일정표에 관한 검토
 (SLF 35/9/ADD. 1, SLF 35/9/1)

- 1) 소위원회의 업무진행 및 업무일정표 준비에 관한 재검토
- 2) SFV 회의를 위한 MSC에 대한 권고사항 검토
- (의제 5) 기타
- (의제 6) 소위원회에 대한 작업보고서

II. 의재별 토의내용 및 결과

(의제 1) 의제 채택

1. 의장은 이 회의가 SLF 소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중요한 업무임을 상기시키면서 회의를 시작했고 이번 회의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준 스페인 해사당국과 정부에 감사를 표함.

2. 스페인 대표는 해사당국을 대신한 인사에서 자국의 어선과 선원의 안전에 관한 자국의 관심을 강조하고 이번 회의의 성공적인 진행 및 성과를 기대함.

3. IMO 사무국은 어선의 안전에 관한 기구의 활동에 대해 재조명하고 의정서 채택을 위한 일정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IMO를 대신하여 스페인 정부에 감사를 표함.

4. 초기의 의제에 이견이 없이 의제 및 회의일정을 채택함.

(의제 2) 의정서 초안의 조문에 관한 검토

일반사항

1. 의정서의 발효를 위해 길이 46M 미만의 어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선택 부속서의 채택을 지지함.

의정서의 지위 (STATUS)에 관한 검토

2. 두 가지 방법이 제시되었으나 작업반은 원칙적으로(의정서를 하나의 문서처럼 협약에 흡수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 협약에 가입한 나라이든 아니든 의정서를 비준하도록 하는 것 및 의정서만 발효시키

는 것) 등의 내용인 APPROACH B의 채택을 동의함.

HSSC의 도입에 관한 고려

3. 검사와 증서에 관한 통일된 체계를 위해 HSSC의 도입문제를 고려하였으나 어선의 특수성을 고려, 의정서에 HSSC의 도입은 필요없고 검사와 증서의 규정에 대한 것은 묵시 개정 절차에 따르는 것에 동의함.

의정서에 선택 부속서의 도입 가능성과 적용 규정에 관한 검토

4. 대부분의 대표가 길이 24M까지의 소형선을 위한 규정을 포함한 선택 부속서를 의정서에 포함시키는 것을 지지하였으나, 각국마다의 어선의 특성이 있음을 고려, 기준을 나누자는 의견들도 있어 의정서의 조문 3 (적용)에서 좀더 다루기로 함.

의정서의 조문에 관한 검토

5. 조문 1 - 일반의무

작업반은 이 초안이 MARPOL에서 수정 도입한 것을 인식하면서 제안대로 지지함.

6. 조문 2 - 정의

작업반은 이 초안이 협약 원문대로 작성된 것을 인식하고 "PARTY"의 정의가 VIENNA 협약에 의해 포함되지만 원문대로 남겨두도록 하였으며 조문 2의 (f) 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함.

(f) "REGULATIONS"는 의정서에 의해 수정된 협약의 부속서에 포함된 규정을 의미한다.

7. 조문 3 - 적용

작업반은 선택 부속서에 대체로서의 규정을 도입하는 것에 동의했고 각기 다른 지역에서의 어선의 조업에 관한 것은 주관청이 적용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IMO에서 동일한 요구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안에도 동의함.

8. 조문 4- 증서와 통제

작업반은 초안의 조문 4를 HSSC를 도입한 다른 협약들과 SOLAS 74의 최근의 문서 등에 일치시켜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더이상 필요없는 조약들은 삭제하자는 안에 대해 (7)항<※이 의정서의 비당사국 선박이 보다 유리한 대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사국은 이 선박에 대하여 의정서상의 제요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정치적인 관점에서 위원회 등의 상급 기구에서 최종 토의되도록 () 안에 남겨 놓도록 하는데 동의함.

또 2항<※만일 이 증서가 유효한 것이라면 선박 또는 그 설비의 상태가 증서상에 기재사항과 실질적으로 합치되지 않거나, 관련규정에 따르지 않았다는 명백한 근거가 없는 한 인정하여야 한다>의 표현이 하위기준을 수락한 국가들의 증서를 인정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고 작업반은 이 문제에 대해 인식을 했으며 IMO 상위기구에서 토의토록 하였음.

9. 조문 5 - 불가항력

작업반은 다른 협약들을 비교하여 볼 때 이 조항은 현재대로 남기는 것에 동의함.

10. 조문 6 - 정보의 통보

작업반은 편집상 약간 수정하는 이외에는 초안에 동의함.

11. 조문 7 - 어선의 해난

초안에 동의함

12. 조문 8 - 다른 조약 및 해석

1982 LAW OF THE SEA COVENTION 이 조문에 삽입되어야 한다고 했으나, SLF 35/9의 초안대로 하기로 함.

13. 조문 9 - 서명, 비준, 수락, 승인 및 가입

의정서 수락국이 매년말 자국의 어선수를 사무국에 통보하도록 하는 (3)항의 추가를 전제로 초안에 동의함.

14. 조문 10 - 발효

작업반은 의정서를 수락한 국가들의 어

선수를 취합하여 그 수를 기초로 발효시키는 방법을 지지했고 최종 수치는 협약에 의해 결정되도록 하고 최근의 24M 이상의 어선수를 얻도록 요청함.

15. 조문 11 - 개정

초안에 있는 100 TON 이상이란 문구를 길이 24M 이상으로 수정하는데 동의함.

16. 조문 12(폐지), 조문 13 (기타 및 등록) 및 조문 14(언어) 등은 초안대로 동의함.

기 타

작업반은 의정서의 명칭을 “TORREMOLINOS SFV 77/9 ..”라고 하자는 의견에 만장일치로 지지함.

(의제 3) 의정서 부속서 및 부록에 관한 검토

부속서의 일반규정 및 양식에 관한 검토

1. 작업반은 SLF 35/9에 제안된 부속서의 형식에 관해 토의함.

가. 규정은 각 CHAPTER별로 연속적인 번호를 부여한다.

나. 정의는 각 관련 CHAPTER에 삽입시킨다.

다. 소위원회에서 개발, 수정된 수정안은 “THE EXISTING TEXT OF REGULATION () IS INSERTED”라는 표기와 함께 각 규정에 포함시킨다.

2. CHAPTER I(일반규정) 및 CHAPTER II(구조, 수밀성 및 설비)는 다음 사항을 수정하기로 함.

가. CHAPTER I 규정 2의 정의를 한 CHAPTER 이상에 적용할 수 있는 정의만 포함한다.

나. CHAPTER 1 규정 2(1)의 “NEW VESSEL”이란 정의에 있는 “THE CONVENTION”이란 말을 “THE

PROTOCOL”로 한다.

다. CHAPTER I 규정 2의 “ANNIVERSARY DATE”란 정의를 의정서에 HSSC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다는 작업반의 결정에 따라 삭제한다.

라. CHAPTER 1 규정 3의 제목을 “EXEMPTIONS”로 한다.

마. CHAPTER II 규정 4의 제목을 “WATERTIGHT DOORS”로 한다.

3. 검사와 증서에 관한 규정인 CHAPTER I의 규정 6에서 10은 HSSC 제도를 도입하지 않기로 반복하고 HSSC 제도에서 사용한 술어상의 의미와 일치하도록 규정을 재검토 할 것을 사무국에 요청함.

4. 검사요구 사항을 IACS(국제선급협회)의 문서(35/9/3)와 같이 신조 및 현존 어선의 검사에도 적용해야 하는지에 관해 검토하고 현존선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함.

10장의 개정에 관한 검토

5. CHAPTER 10에 관한 개정안으로 GMDSS의 도입관련인 NAV 36/WP. 2/REV. 1의 문서를 검토하고 “SOLAS CHAPTER V의 규정 11, 12, 20 및 21 증 어선에 관한 사항을 토레모리노스 의정서 CHAPTER X (선박용 항해장비)에 옮기고 SOLAS CHAPTER V를 의정서의 발효일로부터 이런 규정들의 적용을 위해 토레모리노스 의정서 가입국의 어선들은 제외하도록 수정한다.”는 내용인 ALTERNATIVE 3)을 권고하였으며, 10장의 기준으로 길이를 사용할 것인지 총톤수를 사용할 것인지에 검토하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소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사무국에 요청함.

1977 회의의 권고와 SFV 협약 부속서의 부록에 관한 검토

6. CHAPTER I의 규정 6에서 10까지의 개정후 부록에 있는 증서와 양식을 변경하

기로 하고 부속서 2(구명설비의 사양)와 첨부 2(생존정과 구조정 의장품표)는 LSR 소위원회의 개발에 따라 변경되었음을 지적함.

또 첨부 3(회의에 의한 권고)는 사무국이 검토후 소위원회에 제출키로 하였고 첨부 4(회의에 의한 결의)는 1977 협약의 의결문으로 남겨놓을 수 있다고 했으나 첨부 5는 무시하기로 함.

(의제 4) 의정서 초안의 개발을 위한 업무일정표에 관한 검토

소위원회의 업무진행 및 업무일정표 준비에 관한 검토

SLF 35/9/ADD. 1 및 SLF/9/1의 문서에 있는 SLF와 다른 소위원회의 작업계획을 검토하고, 그 내용을 지지함.

SFV 회의를 위한 MSC에 대한 권고사항 검토

작업반 회의를 92년과 93년에도 회의를 소집할 것이며 그에 필요한 예산을 이사회에 건의하여 확보하도록 소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함.

(의제 5) 기타

별다른 제안없이 스페인 주관청의 호의에 대해 감사를 표함.

(의제 6) 소위원회에 대한 작업보고서

작업반의 보고서를 전반적으로 검토, 승인할 것을 바라면서 특히 다음 사항을 요청함.

가. 부속서 2에 있는 의정서의 조문 초안에 관한 지적

나. 의정서 개발을 위해 회기 중 작업반을 소집하여 처리하도록 할 것

다. 1992~1993년 2년 동안 의정서 채택을 위한 작업반의 소집을 승인할 것